

## ■ 화제의 뉴스 ■

### 권익위, 국유지 사용료는 거주여부와 무관하게 '주거용' 요율 적용하여야

국유재산법 시행령에 의하면, 국유지 연간 사용료는 재산가액의 5%를 적용하여 산정하지만, 주거용의 경우 2%를 적용합니다(제29조 제1항). 그런데 한국철도시설공단은 2012년 10월경 용산구 경원선 주변 무허가주택 중 소유자가 실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'임대사업용'이라고 평가한 후, 5%를 적용하여 사용료를 부과하였습니다.

한국철도시설공단은 위 주택들에 대하여 기존에는 2%를 적용하였습니다. 또한 사용료를 부과하면서 지난 5년간 사용료 차액(3% 상당)을 동시에 부과하였습니다. 그래서 과거 5년간의 추가 사용료를 지불할 상황에 놓였던 소유자들의 법률상담 및 민원이 이어졌습니다.

국가권익위원회는 소유자의 실거주여부와 무관하게 건축물의 실질적 기능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. 이와 함께 한국철도시설공단에 5%를 적용한 사용료부과는 위법·부당함을 이유로 시정권고를 내렸습니다. 유사 민원, 행정소송이 많은 상황에서 이번 결정은 분쟁 해결에 큰 의미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.

#### [관련 기사]

- [철도 국유지 무단사용료 인상에 '제동'](#) - 연합뉴스 | 2012. 11. 29.
- [철도 주변 국유지 사용료 인상안 제동](#) - 한국경제TV | 2012. 11. 29.